

제7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26조(계약목적)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수급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
- ④ 급여계약 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

제27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.
-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.

제28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-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, 계약 당사자(기관주체, 서비스이용자, 서비스보호자), 인적 사항, 계약기간, 계약의 변경, 계약의 해지,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, 배상 책임, 이용규정, 개인정보보호의무,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,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.
-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급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제29조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- ① 시행규칙 제26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,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,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

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(2024.01 기준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수급자		0% 부담		
	차상위계층		경감(6%), 경감(9%)		
	일반수급자		15% 부담		

④ 방문요양, 방문목욕 수가표(2024.01 기준)

	30분	60분	90분	120분	150분	180분	210분	240분
	16,630	24,120	32,510	41,380	48,250	54,320	60,530	66,770
방문목욕	차량 이용 시					방문목욕(차량 미이용)		
	차량 내 목욕		가정 내 목욕					
	84,670		76,340		47,670			

제30조(급여비용 청구)

-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.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-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)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.
-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(한도액)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-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
제31조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)

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.

- 서비스제공자(이하 “갑”이라 칭함)의 의무
 - 서비스이용자(이하 “을”이라 칭함)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
 -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서비스이용자 의무
 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 -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 -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
- 보호자(이하 “병”이라 칭함)의 의무
 -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 -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 -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준수사항
 -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 -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,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 할

수 있으며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3.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.

4.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.

5.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

제32조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

권리	○ 제공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가능 ○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. ○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(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) ○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○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. ○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○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
의무	○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 ○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○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 (해외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) ○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 ○ 수급자의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○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. ○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○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

제33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

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-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② 수급자의 의무

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
-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③ 수급자의 권리

-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 -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 -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 -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 -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 -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, 비용(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)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.
- 수급자 교육자료를 받을 수 있다.(낙상예방 지침,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, 탈수예방 지침, 배변도움 지침, 관절구축 예방 지침,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)

제34조(계약의 해제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사망 :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
- ② 질병 :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비급여 연체 :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본인부담금 연체 :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'갑', '을'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
- ⑤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: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,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/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⑥ 부정 계약 :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/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- ⑦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
- 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⑨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- ⑩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